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1. 19 선고 2020가단1551 판결 [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저당권
설정등록 말소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1. 1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9. 10. 17.자 체결된
저당권설정계약 및 별지2 목록 순번 1, 2, 3번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2019. 11. 26.자 체결된
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선박에 관하여 전남 진도군 2019. 10. 17. 마친
저당권설정등록 및 별지2 목록 순번 1, 2, 3번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전남 진도군 2019. 11. 26.
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편병호

별지